

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2. 15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: 2017. 2. 16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2. 27.

2. 개정이유

-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,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적립금의 재원(안 제2조)

- 일반회계 출연금(지방세, 순세계잉여금, 조정교부금, 보통교부세 3년평균 초과분),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나. 적립금의 조성(안 제3조)

-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
-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

-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
-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,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

다. 적립금의 사용(안 제4조)

- 사용요건: 세입감소, 긴급한 필요
 - 한 회계연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(적립총액의 50퍼센트)
- 사용용도
 -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
 -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
 - 긴급한 대규모 사업비 등

라.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6조~제9조)

- 위원장 부군수, 8명 이내 구성

마. 적립금의 존속기한(안 제10조)

- 2021년 12월 31일까지(5년)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국가와 지방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
- 나. 조례제정 이후 적립금이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